

2023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운영계획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23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한 국 소 방 안 전 원 장

1 시험과정 및 일정

○ 시험과정별 횟수 및 일정

구 분		운영횟수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특급	18회	1차	상반기	4월 중	5월 중	
		2차	각 1회	6월 중	6월 중	7월 중
	19회	1차	하반기	9월 중	9월 중	10월 중
		2차	각 1회	10월 중	11월 중	12월 중
1급		603회	[홈페이지-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일정확인]			
2급		1,085회				
3급		262회				

※ 특급 시험일은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전문자격(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일정 및 공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시험운영횟수 및 일정은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과정별 시험일정은 1개월 전 공고 예정임

○ 시험장소 :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지부 교육장 또는 지정 장소

2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단, 학·경력 응시자의 경우 방문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또는 재시험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안전원 홈페이지(또는 15개 시·도지부 사무실)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3. 12. 30(방문접수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3

응시자 제출서류 등

- 기본 제출서류
 - 시험응시원서 1부
 - 사진(3.5cm × 4.5cm) 1매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학 력) 졸업증명서
 - (교과목)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 (자 격)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경 력) 해당 대상물이 특·1·2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임여부 및 선임경력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구 분		23.06.30 이전	23.07.01 이후
특급	1차	15,000 원	18,000 원
	2차	20,000 원	24,000 원
1·2·3급		10,000 원	12,000 원

종목	응시자격
특급	<p>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p> <p>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p>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p> <p>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참고 사항</p> <p>- 시험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시험응시일 이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p>

종목	응시자격
1급	<p>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p>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p> <p>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p> <p>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p>

종목	응시자격
2급	<p>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p>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p> <p>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p> <p>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파.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p> <p>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p>

종목	응시자격
3급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 1) 강습교육 및 응시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안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으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

5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

시험과정		문항수	문제형식	시험시간
특급	제1차	100문제	객관식(4지1선택형)	120분
	제2차	20문제	주관식(서술형, 계산형 등)	90분
1.2.3급		50문제	객관식(4지1선택형)	60분

○ 2023.06.30. 이전 적용 시험과목

종목		시험과목	
		제1과목	제2과목
특급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소방관계법령 • 건축, 전기, 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초고층특별법 • 소방기초이론 • 연소, 방화, 방폭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 종합방재실 운용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화재원인 조사실무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화재피해 복구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 종합방재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화재일반 • 화기취급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2023.07.01. 이후 적용 시험과목

종목		시험과목	
		제1과목	제2과목
특급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안전관리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관계법령 건축. 전기. 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재난관리법령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기초이론 연소. 방화. 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피난안전구역 운영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종목	시험과목	
	제1과목	제2과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계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합격자 발표 :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60일)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도지부 게시판 등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응시원서(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수료 환불은 안전원의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시험응시표”와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 장소에 지정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불가합니다.
- 답안작성 시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또는 흑색 볼펜 등 지정된 필기 도구(적색펜, 연필 및 샤프 제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허위·착오 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장소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 안내

- 대표번호 : 1899-4819
- 시·도지부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서울지부	02) 2671-9076~8	경기지부	031) 257-0131~3
서울동부지부	02) 3298-6951	경기북부지부	031) 945-3118, 4118
부산지부	051) 553-8423~5	강원지부	033) 345-2119, 2120
대구경북지부	053) 429-6911, 7911	충북지부	043) 237-3119, 4119
인천지부	032) 569-1971~2	전북지부	063) 212-8315~6
광주전남지부	062) 942-6679~81	경남지부	055) 237-2071~3
대전충남지부	042) 638-4119,7119	제주지부	064) 758-8047, 755-1193
울산지부	052) 256-9011~2	-	-